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 2109-01-451 (심의일 : 2021.09.24)

엠알(M.R.)기업통장 상품설명서 (기업금융고객용)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엠알(M.R.)기업통장
- 상품특징 : 기업 및 단체가 단기간 여유자금을 예치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입출금예금 상품입니다.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법인, 단체(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상품종류	■ 기업자유예금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을 통해 가능 ■ 해지 : 영업점을 통해 가능
이자지급시기	■ 원금 및 이자는 고객의 지급 요청 시 고객 앞 지급됩니다. ■ 예금의 이자는 매년 1, 4, 7, 10 월 둘째 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다음 날 원금에 가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table>
<tr><td></td><td colspan="2">■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td></tr>
<tr><td>기본이율</td><td colspan="2">■ 이 예금은 선입선출법 에 따라 각각의 입금 건 금액별로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1 일간 복수의 입금 건이 존재하는 경우 총 입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이율을 결정합니다.
(연, 세전, 2021 년 09 월 13 일 현재)
<table>
<tr><th>일별 총 입금액</th><th>기본이율</th></tr>
<tr><td>50 만원 미만</td><td>0.01%</td></tr>
<tr><td>50 만원 이상 1 천만원 미만</td><td>0.01%</td></tr>
<tr><td>1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td><td>0.01%</td></tr>
<tr><td>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td><td>0.01%</td></tr>
<tr><td>5 억원 이상 10 억원미만</td><td>0.05%</td></tr>
<tr><td>10 억원 이상</td><td>0.15%</td></tr>
</table></td></tr>
<tr><td>이자
산출근거</td><td colspan="2">■ 이자계산기간 동안 일별 총 입금액에 기본이자율을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이자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단, 이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table>
<tr><th>이자계산기간</th><th>이자결산일</th><th>이자지급일</th></tr>
<tr><td>지난 이자지급일(또는 신규일)로부터
금번 이자지급일 전일까지</td><td>매년 1, 4, 7, 10 월
둘째 주 마지막 영업일</td><td>이자결산일의
다음 날</td></tr>
</table></td></tr>
<tr><td>예금자보호
여부</td><td>해당
</td><td>■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td></tr>
<tr><td>세제혜택</td><td>불가능</td><td>■ 해당사항없음</td></tr>
<tr><td>양도 및
담보제공</td><td>양도 가능
담보제공 불가능</td><td>■ 양도 가능합니다.
■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td></tr>
<tr><td>거래중지계좌
편입</td><td colspan="2">■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별도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께서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은행창구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받아 금융거래 목적 및 본인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예금잔액이 10,000 원 미만이며, 1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 원 이상 50,000 원 미만이며, 2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td></tr>
</table>

	(3) 예금잔액이 50,000 원 이상 100,000 원 미만이며, 3 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4) 예금잔액이 100,000 원 이상이며, 4 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계약해지	■ 본 예금 계약의 해지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수수료	■ 통장 재 발행 시 수수료 2,000 원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주요내용	■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위하여 한국씨티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유의 사항

- **금리의 변경**

  상기 금리는 은행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리가 변경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금리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 2 항" 및 "현지약관 제 9 조 3 항"에 의거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약관의 변경**

  이 상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은행의 사정에 의해 상품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 관련 사항을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약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21 조 제 2 항" 및 "현지약관 제 22 조 제 2 항" (2014 년 9 월 7 일 이전 계좌 개설의 경우 "현지약관 제 21 조 제 2 항")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

- **적용 약관**

계좌 개설 시점	통장 방식	무통장 방식
2014년 9월 7일 이전		상품별 특약 일반 계좌 약관 현지 약관

2014년 9월 8일 이후, 2020년 2월 23일 이전	상품별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상품별 특약 현지 약관 계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약관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약관
2020년 2월 24일 이후		고객안내서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계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약관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약관

*** 다만 별도의 신청서를 통해 고객이 기존 약관을 새로운 약관으로 대체함을 승인하는 경우 새로운 약관이 적용됩니다**

- 이 상품은 한국씨티은행 기업자금상품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7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iti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해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도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